

2019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- 일 자 : 2019. 4. 22.(월)
- 장 소 :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2019회계연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
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

푸 른 도 시 국

푸른도시국 '19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.

□ 예비비 사용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예비비의 사용)

□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 531,000천원 (2019.3.14.)

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'13년 6월, 남산공원에서 자전거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한 시민이 도로관리 부실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(손해배상청구)을 청구하였고
- '19년 1월, 법원의 1심 판결 결과, 남산공원의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 일부패소(원고 60%, 서울시40%)를 선고하였음. (* '19.2월 서울시 항소 제기)
-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*판결주문에 적시된 가집행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경우, 추후 서울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기 지급된 판결금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,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었던 바,

*판결주문 : 판결금 437,122천원 및 이자 지급, 판결내용 가집행 가능

- 예비비 5억 3천1백만원을 배정받아 판결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'강제집행 정지'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 함.
- 공탁 미이행 시 서울시가 원고의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할 수 없었고, 예산편성 당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등 예비비 사용 요건인 시급성 및 불가측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5억 3천1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 함.